

2019. 1. 17 개정

2019. 2. 2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-약관-001호(2019. 1. 9)

「함께하는 사랑 적금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함께하는 사랑 적금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, 『적립식예금 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법인으로 하며, 고객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3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.

제6조 적립방법 및 금액

- ① 고객은 이 예금 가입 시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는 정기적립식과 매월 월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중에서 적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적립금액은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, 매월 최대 1백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. 단, 법인은 최대 1천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한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의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8조 우대이자율

이 예금의 개인 가입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(0.9)%의 우대이자율을 계약일 당시 고시한 이자율에 더하여 만기 해지 시 제공한다.

1.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급여’, ‘4대연금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)’, ‘가맹점대금(BC/하나)’ 중 한가지 이상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 시 연 (0.2)%
2.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‘아파트관리비’ 또는 ‘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’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결제 시 연 (0.2)%
3. KEB하나은행을 처음 거래 시(가입일 현재 KEB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) 또는 KEB하나은행을 10년 이상 거래 시(고객최초등록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) 연 (0.3)%
4. 기초생활수급자, 근로장려금수급자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, 다문화 가족,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봉사활동 확인증·기부금 영수증·기부금 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(0.2)%

제9조 기타

-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(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합니다),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**2019년까지**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.1%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(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)에 후원금을 제공합니다.
- ② 제1항의 후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‘함께하는 사랑 적금’이 5백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합니다.